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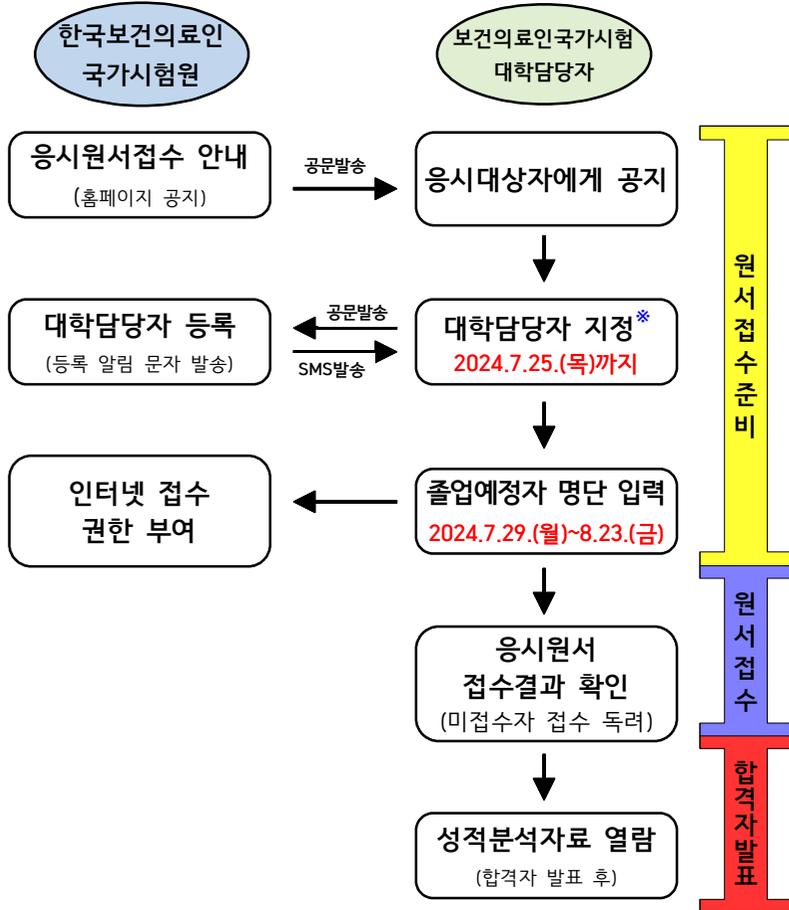
2024년도 제48회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

본 안내 자료는 단순히 응시자 및 대학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시험 관련 세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는 시행계획 공고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장	관련 근거 및 시행계획 공고 안내	2
제2장	응시자 관리를 위한 안내	2
제3장	대학담당자 지정 및 역할	4
제4장	졸업예정자 등록 및 관리	6
제5장	응시원서 작성	7
제6장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9
제7장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10
제8장	응시취소 및 환불신청	12
제9장	합격자 발표 후 성적분석자료 열람	13
제10장	면허교부 신청	15
<별첨>	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원서접수를 위한 업무 흐름도



* 학교(과)가 신설 또는 명칭 변경되어 국시원에 최초로 대학담당자를 지정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문을 발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안내문 4페이지 「대학담당자 지정 및 역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장 관련 근거 및 시행계획 공고 안내

1 관련 법령

1. 응시자격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2-3. (생략)

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교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교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② (생략)

2. 결격사유 : 국민영양관리법 제16조

3. 제출 서류

- 원서접수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면허발급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4. 면허증 발급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2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24.7.12.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명 :

2024년도 하반기 및 202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본 공고문을 다운로드 받아 원서접수, 시험시행 등 일정확인

2장 응시자 관리를 위한 안내

1 응시원서 접수 관련 정보 안내

-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안내」 공문 수령 즉시, 대학 홈페이지 및 학교 게시판에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안내
- 졸업예정자 뿐만 아니라 졸업자에게도 응시원서 접수 방법, 시기 등을 정확히 안내
- 응시원서 접수 시기에 올바르게 접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철저
 - 증명사진 준비, 응시수수료 결제 준비 등
-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은 원서접수 기간 이외에 추가 접수를 받지 않음.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 내에 원서접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②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관리

1. 원서 접수

- 졸업예정자 명단에 등록된 인원은 원서 접수가 가능
(등록되지 않은 졸업예정자는 접수하지 못하므로 누락 없이 등록해야 함)
- 응시자격은 국시원 홈페이지 직종별 응시자격 안내페이지 및 응시자격 자가 진단 시스템 또는 담당자 문의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함을 안내

2. 졸업 탈락

-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로 등록된 자중 해당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졸업을 못한 경우, 국시원에 졸업 탈락 관련 공문을 발송

3. 졸업 유예

-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자 중 2025년 2월말 이전에 졸업이 확인된 사람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함. 단, **2025년 2월말 이전에 졸업 요건(학위등록 요건)**을 갖추어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복수전공, 제2전공, 이중전공 또는 동일학교 내 여타과목 이수 등으로 졸업이 일정기간 늦어진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부여하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 또는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 면허증 발급이 가능함. 이와 관련한 **졸업 유예 공문**을 발송

공문서식

※ 총장(대학장) 실결재 및 직인날인 필수(관인생략 불가)

수신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자격관리부장)

제목 : 000대학교 2024년도 제48회 영양사 국가시험 졸업 유예(탈락)자 송부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 유예(탈락)자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인적사항

학과	성명	생년월일	비고
_____학과	홍길동	YYYY. MM. DD.	

나. (졸업 유예 예시) 위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기준학점 이수 및 기타 졸업 요건을 충족하여 2025년 2월 졸업에 결격사유가 없었으나,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부/복수전공/교직이수, 취준준비)를 위하여 졸업을 유예하오니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 탈락 예시) 위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요건 미달(졸업시험 탈락/ 졸업 학점 부족 등)로 인해 졸업 탈락함을 알려드립니다.

③ 졸업자(응시경험이 있는 사람) 관리

-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시행 일정 안내
- 전년도와 달라진 제도 등 안내
- **인터넷 접수만 운영됨을 안내**(※국시원 근무시간(평일 09:30~18:00)에 방문하여 민원PC를 통해 인터넷 접수 가능)
- 응시자격은 국시원 홈페이지 직종별 응시자격 안내페이지 및 응시자격 자가 진단 시스템 또는 담당자 문의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함을 안내

3장

대학 담당자 지정 및 역할

① 대학담당자 등록 신청

가. 자격요건 : 해당 학과 조교, 교직원만 대학담당자로 지정 가능

나. 담당업무 : 졸업예정자 명단 등록, 접수 현황 확인 등

다. 공문발송 : 아래 [공문서식]에 따라 총장(대학장) 실결재의 공문 발송

라. 발송기한 : **2024. 7. 25.(목)까지**

마. 발송방법 : 전자결재, 이메일(cs@kuksiwon.or.kr) 중 **1가지 방법으로만 발송**
※ 팩스 및 우편 불가

※ 이메일로 공문을 발송했을 경우 공문 수신여부를 대학담당자 메일로 일주일 이내 회신 예정이며, 공문 수신확인 메일이 오지 않았을 경우 고객센터(1544-4244)로 문의

■ 대학담당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아래 공문을 발송하지 않음

■ 학교(과)가 신설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만 아래 공문을 발송

■ 대학담당자 변경은 홈페이지 상단 [대학담당자]-[기존 담당자 정보로 로그인]-[담당자 정보수정] 메뉴에서 직접 정보 변경

공문 서식

※ 총장(대학장) 실결재 및 직인날인 필수(관인생략 불가)

수신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자격관리부장)

제목 : ○○대학교 ○○학과 영양사 국가시험 대학담당자 등록 요청

응시직종	영양사	담당자 정보	성명	
대학명	_____대학교		직위	
학과명	_____학과		핸드폰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초기 비밀번호*)			8 ~ 10자리 (영문자 + 숫자)	

붙임 :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반드시 첨부.

※ 대학담당자 등록 후 반드시 [홈페이지-대학담당자-담당자 정보수정]에서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사용

2 대학담당자 등록(국시원에서 등록)

가. 국시원은 각 대학교가 요청한 대학담당자를 국시원 홈페이지에 등록·변경
나. 등록 완료 시 대학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 발송

‘○○대학교 ○○학과 대학담당자가 등록되었음’

다. 학과(전공)명 관련 유의사항

- 국시원에서 발송하는 **SMS 내용의 학과(전공)명**으로 대학담당자 로그인
- 응시원서 접수 시 졸업예정자는 국시원에 등록된 학과(전공)명이 자동으로 설정되나, 졸업자는 본인이 선택한 학과(전공)명으로 설정됨
- 졸업자가 기재한 학과(전공)명이 국시원에 등록된 학과(전공)명과 다른 경우 해당 졸업자의 정보를 학교(학과)별 시행결과 및 성적통계에서 대학담당자가 조회할 수 없음. 등록된 학과(전공)명을 졸업자에게 정확히 안내하여 동일한 학과(전공)명으로 응시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대학담당자의 역할

- 시행계획공고, 접수 안내 홍보
- 소속 대학의 응시대상자 관리
- 졸업예정자 등록 및 접수현황 확인
- 각종 공문 발송

4 기타 숙지 사항

1. 추가 접수 없음

-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결제 완료까지 포함)하여야 함. 접수 마감일 18:00 전까지 응시수수료를 미결제할 경우 원서접수가 완료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 국가시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천재지변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후에 추가접수를 받지 않음.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 바람
- ※ 응시원서 접수 관련 세부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방법]을 참고

2. 개인정보보호 강화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시원에서는 개인별 합격여부 또는 성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서식2]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 졸업예정자 개인별로 동의서를 받아서 학교에서 보관

- [서식2]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학담당자 신규등록 요청 공문 발송 시 대학담당자가 작성하여 **국시원으로 제출함**(미제출시 대학담당자 지정과 졸업예정자 등록이 불가하며, 졸업예정자의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능함). 단, 대학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 대학담당자 정보 변경 메뉴에서 [서식2]를 확인·제출하며, 국시원으로 별도 송부하지 않음.

3. 기타 문의 : tel 1544-4244

4장 졸업예정자 등록 및 관리

1 졸업예정자 명단 입력

1. 기간 : 2024. 7. 29.(월) ~ 8. 23.(금)

- 졸업예정자 명단은 해당 시험에 **실제로 응시할 대상자만** 입력
- 졸업자(2024년 8월 졸업자 포함)는 입력하지 않음
- 편입생의 경우, 해당직종 면허증 취득유무를 확인하여 면허증을 이미 취득한 사람은 입력하지 않음(면허증 취득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2.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상단 [대학담당자]-[졸업예정자 등록]

- 직종·학교·학과·담당자 성명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 졸업예정자 등록
- 직접 입력 또는 엑셀파일 업로드 가능

3. 입력사항 : 성명, 생년월일-(성별코드), 연락처, 졸업예정일(년-월-일)

- 외국국적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를 입력 (예: 901234-5, 901234-6)

2 졸업예정자 명단 업로드 파일 만들기

1. 서식 : 국시원에서 정한 엑셀 서식 사용

- 국시원 대학담당자 홈페이지 로그인 후 [알림판] “졸업예정자 등록 전 필독사항” 게시글 내 [엑셀업로드 예제 다운로드]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 다운로드 받은 파일명 및 시트명은 수정하지 않아야 하며, 엑셀 셀 서식에 명단을 기재하되 반드시 아래 서식에 유의하여 기재

2. 필드 형식 고정(※성별코드는 기존 주민등록번호 7번째 숫자)

이름	생년월일-(성별코드)	연락처	졸업예정일
홍길동	901111-1	010-1111-1111	2024-02-14

3. 셀 서식 고정(Ctrl)+1 누르면 확인 가능)

이름	생년월일-(성별코드)	연락처	졸업예정일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

4. 유의사항

- 생년월일-(성별코드), 연락처, 졸업예정일 입력 시 '-'(하이픈)을 반드시 입력
- 잘못된 생년월일-(성별코드) 기재 시 오류발생 (외국국적자 파악 필수)
- 성과 이름은 모두 띄어쓰기 없이 입력(예: 홍길동(O), 홍 길동(X))
- 졸업예정일은 '2025-02-14' 형태로만 입력가능(구체적 일자 반드시 기재)
- 글자 앞뒤 및 엑셀 빈칸에 공백(스페이스바 입력)이 있을 경우 오류발생
- 파일명 및 시트명을 변경하지 말고 다운로드 받은 그대로 사용
(파일명 : 졸업예정자 명단 업로드용 파일 / 시트명 : xls시트)

3 졸업예정자 명단 입력 기간 이후 명단 수정 시

- 국시원에 졸업예정자 명단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전화로 요청

4 졸업예정자에 대한 응시원서 접수 결과 확인

- 국시원 홈페이지 [대학 담당자]-[원서접수 결과확인] 메뉴에서 응시원서 접수 현황 확인 가능(접수기간 종료 후 확인 불가)
- 응시원서 접수 마지막 날은 반드시 '원서접수 결과 확인'을 통하여 미접수자의 접수 완료 독려
- 추가접수가 없으므로, 접수 기간 내에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안내

5장 응시원서 작성

1 응시원서 작성

1. 접수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 **접수 기간 : 시작일 09:00부터 ~ 마감일 18:00까지(마감일 18:00 이전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 접수가 완료됨)**
- ※ 국시원에 방문하여 접수를 해야 하는 경우, 근무시간(평일 09:30~18:00) 중에 국시원에 방문하면 민원 PC에서 인터넷 접수할 수 있음.

2 응시원서 작성 순서

1. 회원가입 등

- 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면허신청 등에 사용
- 연락처 : [핸드폰 / 이메일]을 필수 입력
- ※ 핸드폰번호와 이메일주소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2. 응시원서 작성

- 시험선택 : **영양사 국가시험**
-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 사용.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함. 코리아크레딧뷰로(02-708-1000)에 문의
-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3. 응시원서 접수 내용에 대한 서약

본인은 위에 기재 표시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추후 응시자격 조희나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하여 응시자격이 없다고 판정되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및 관련 법령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아도 이를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4. 응시수수료 결제 <제7장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참고>

-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 감면 자격확인] 중 선택하여 진행
-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5. 접수결과 확인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
- 영수증 발급 : <https://www.easypay.co.kr> [결제내역조회]에서 열람·출력

6.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중앙 [응시원서 수정] 메뉴
-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 수정 가능 범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 마감~시험시행 하루 전 :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등
- ※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증명서류(주민등록초본이나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에서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참고)

7. 응시표 출력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중앙 [응시표 출력]
- 기간 : 직종별 별도 출력일* 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가능
(※ 시행계획공고 중 시험장 선택제 관련 별첨자료 참고)
-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6장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사진 등록

○ 원서접수용 공통 규격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셀프 촬영,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에도 동일하게 사용**
 - ※ 응시원서 사진 변경 : **시험일 7일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응시원서관리]
- [응시원서 수정]
 - ※ 면허 사진 변경 : 면허교부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변경 가능하나 **면허발급기간이 최대 10일까지 추가 소요**될 수 있음.
 - ① 변경 사진
 - ②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③ 신분증 사본
- 스캔 : JPG file(컬러), 3.5 × 4.5 cm 크기(276 × 354픽셀 이상), 해상도 최소 200 dpi 이상(600 dpi 이상 권장)

7장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 결제 안내

- 결제 방법 : 온라인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간편결제, 간편 자격확인
- 마감 시간 : **인터넷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기 타 : 타인 명의 계좌·카드 결제 가능, **결제수단 선택 후 변경 불가**

1. 온라인 계좌 이체

- 가. 방식 : 입력한 은행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자동 출금되는 방식
(단, 계좌의 잔고가 응시수수료보다 더 많아야 함)
- 나. 이용가능 금융기관 : 상세 이용가능한 은행 및 서비스 가능 시간은 결제창 내의 [은행상태 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
 - ※ 계좌이체 이용가능 시간은 각 은행마다 다르므로 확인 필요
 - ※ 산업, 수협, 신협, 우체국 등은 법인명의 계좌에서 이체가 불가능할 수 있음
- 다.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에는 18:00까지만 가능(결제를 완료해야 원서접수 완료됨)**
- 라. 기타사항 : 타인명의 계좌 결제 가능

2. 신용카드 결제

- 가. 방식 : 국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식
- 나. 이용가능 카드 : 국내에서 발행한 모든 신용카드/체크카드(단, 직불카드, 직불카드 겸용 체크카드, 해외에서 발행한 모든 신용카드는 사용 불가)
- 다.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에는 18:00까지만 가능(결제를 완료해야 원서접수 완료됨)**
- 라. 기타사항 : 타인명의 카드 결제 가능

3. 가상계좌 이체

- 가. 방식 : 결제 은행 선택 후 가상계좌가 생성되어 수신된 가상계좌번호에 응시수수료를 입금(이체)
- 나. 이용가능 금융기관 : 상세 이용가능한 은행 및 서비스 가능 시간은 결제창 내의 [은행상태 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
 - ※ 가상계좌 이용가능 시간은 각 은행마다 다르므로 확인 필요

- 다. 입금방법 : 인터넷 뱅킹 또는 무통장 입금(은행창구 방문(영업시간 내))
 - 무통장 입금 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사용불가
 - 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입금하실 은행의 계좌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음
- 라.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에는 **18:00**까지만 가능(결제를 완료해야 원서접수 완료됨)
 - 가상계좌 이체 처리시간을 고려하여 해당 결제수단은 **접수 마감시간(마감일 18:00) 1시간 전까지만 결제수단으로 선택 가능**
 - 본인이 가상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타인이 대리로 입금하여도 관계없음
 -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
 - 가상계좌 안내 SMS가 수신되지 않을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로그인-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응시원서 선택]에서 가상계좌번호 확인 가능

4. 간편결제

- 가. 방식 : 신용카드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에 미리 등록해 지문인식이나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
- 나. 이용가능 수단 : 상계 이용가능한 수단 결제창에서 확인 가능
- 다.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에는 **18:00**까지만 가능(결제를 완료해야 원서접수 완료됨)

5. 감면 자격확인(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 가. 방식 :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감면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감면
- 나. 감면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법정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에는 **18:00**까지만 가능(결제(감면자격확인)를 완료해야 원서 접수 완료됨)
- 라. 기타사항
 -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내에 별도 신청을 통해 감면 가능
 -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기간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마감일 이후 7일까지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 안내]에서 확인

※ 단, 결제기관별로 이용가능 시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특히 결제 마감시간에 결제기관의 서비스 점검 또는 장애로 인한 접수누락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8장 응시취소 및 환불신청

1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2024. 7. 현재기준)

가. 관련근거: 우리원 제증명서 발급·열람 및 응시수수료 관리 지침 제9조

나. 환불요율

■ 개인사정으로 인한 응시취소

구분	환불요율
• 접수마감일 후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
• '기타 응시수수료의 100%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100% 환불기간 경과 후부터 시험일 5일 전까지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을 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 기타 사유로 인한 응시취소

사유	환불요율	신청기한	제출서류
• 시험일 이전 본인의 군입대	응시수수료의 100%	시험일 후 30일까지	입영통지서
• 본인, 형제, 자매, 자녀가 시험일에 결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또는 결혼증명서류
•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의사 진단에 따라 자가 격리된 경우 (시험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입퇴원증명서 또는 진단서
• 시험일 이전 본인의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류 (재적사실 포함), 사망진단서(필요시)
• 시험일 이전 7일 이내 가족의 사망 *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를 준용함			개별안내
• 천재지변 또는 국시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개별안내
• 이 외에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국시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별안내
※ 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한 자는 환불 불가함. ※ 환불신청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그 다음 최초 업무일 까지로 한다. ※ 국시원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국시원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응시취소 및 환불신청 방법

가. 인터넷 신청 :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접수]-[응시취소신청]에서 로그인 하여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

나.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신청

- : ①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응시자 본인) ④ 추가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다. 유의사항 : **환불신청 후 재접수 불가**

- ※ 국시원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마이페이지]-[응시취소 신청내역]을 통해 응시취소 진행 상황 확인 가능(※ 인터넷 환불신청자에 한함)
- ※ 기타 사유로 인한 응시취소 시, 고객센터(1544-4244)로 문의 후 신청 바랍니다.

3 환불 신청 기한

- 인터넷 신청 : 각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까지 인정
- 방문 신청 : 각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근무시간(18:00)까지 인정
- 우편 신청 : 각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 분까지 인정, 우편봉투에 '응시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이라고 기재

♣ 보내실 곳 : (05043)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성지하이츠 2층)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별관 자격관리부 응시취소 및 환불 담당자 앞

- 팩스 신청 : 각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 분까지 인정(fax 02-2251-6329)
- 이메일 신청 : 각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 분까지 인정(call@kuksiwon.or.kr)
- ※ 팩스 및 이메일 전송 후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tel 1544-4244)

4 환불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약 2주 이내

※ 환불신청 관련 유의사항 및 신청서 양식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의 [시험 정보]-[서식모음] 메뉴에서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 참고

9장 합격자 발표 후 성적분석자료 열람

1 열람 내용(대학담당자로 등록된 사람만 이용가능)

- 알림판 : 일반 공지 사항
- 졸업예정자 등록 : 인터넷 접수 가능하도록 등록
- 원서접수결과 확인 : 등록된 졸업예정자 개인별 원서접수 결과를 확인 (접수 기간에만 확인 가능)
- 학교(학과)별 시행결과 조회 : 소속 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들의 연도별 시행 결과를 조회
 - 당해 연도 합격 현황은 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부터 조회가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별 성적에 대한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음
 - 2000년도 이후 시행한 국가시험부터 열람 가능(직종 및 대학별로 상이함)
 - <학교(학과)별 시행결과 조회 예시>

구분	졸업자	졸업예정자	전체
접수인원	00명	00명	00명
결시인원	00명	00명	00명
응시 결격인원	00명	00명	00명
응시인원	00명	00명	00명
합격인원	00명	00명	00명
합격률	00.0%	00.0%	00.0%

- 성적통계 : 소속 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들의 연도별 성적통계 자료 조회
 - 전체 응시자 성적분포도 : 성적 구간대별 전체 응시자 수
 - 학교(학과)별 응시자 성적분포표 : 성적 구간대별 소속 학교 응시자 수
 - 전년도 시험대비 합격자와 불합격자 성적 평균
 - 학교(학과)별 과목별 성적상황표 : 소속 학교 응시자들의 과목별 평균, 표준편차, 최저점, 최고점

- 단체성적 신청 : 대학담당자가 소속 학교 응시자들의 단체성적 증명서를 발급 신청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은 제외하고 소속 학교 응시자들을 무작위순으로 나열한 후 과목별 성적만 제공
 - 신청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발급 불가
 - 개인은 단체성적을 발급받을 수 없음
 - 단체 성적은 각 대학의 학술 및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
 - 단체 성적 발급 수수료 : 1인당 500원
 - <단체성적 엑셀 파일 다운로드 예시>

순서	과목명1	과목명2	과목명3	총점	졸업여부	합격여부
1						
2						

- 단체성적 발급 신청 조회 : 신청일시, 증명서 종류, 신청인원, 결제금액, 결제방식, 처리내역, 발급여부 등을 조회

2 기타

- 모든 통계자료는 학교(학과)명이 동일해야 조회가 가능함. 즉, 학교명 또는 학과명이 변경된 경우, 먼저 변경 전 학교명 또는 학과명에 대한 대학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과거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10장 면허증 교부 신청

1 신청절차



2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보내실 곳 : (05043)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성지하이츠 2층)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별관 자격관리부 면허(자격)교부 담당자 앞

나. 유의사항

- 우편 발송 시,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배송사고를 대비하여 등기번호를 기억해둘 것을 권장함
- 하루에 수천 여 통의 우편물이 접수되어 개인별 우편물 도착여부 확인이 불가함

다. 접수확인 : 국시원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마이페이지]-[면허·자격발급 진행상황]에서 진행상황을 확인

3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1. 면허교부신청서

-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에서 신청서 작성 후 출력
- 면허증 교부 신청서 작성 시 등기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입력

2. 졸업증명서

- 대학별 단체 신청의 경우에도 개인별 제출 서류를 각각 첨부
- 대학에서 보낸 공문으로는 대체 불가능
- 졸업예정증명서는 불인정(졸업예정자는 졸업 후에 면허 신청 가능)
- 발급일이 졸업일보다 먼저인 경우 불인정

3.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에서 다운받아 작성

4. 성적증명서

-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기재한 과목에 반드시 **형광펜**으로 표시
- 2010년 5월 23일 이전 입학자의 경우, 졸업증명서에 입학일자가 표기되지 않는 사람에 한하여 제출
- 과목이수구분, 취득학점, 입학년도 표기

5. 의사진단서

- 의사진단서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 없음
-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 영양사 국가시험 면허증 발급 신청을 위한 의사진단서에는 **감염병환자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함. 특히 위생사와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는 주의요망
- 의사진단서 양식 : 응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검사내용, 검사조건, 진단일,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의사 성명(서명 또는 직인) 및 면허번호
- 의사진단서 유효기간 : 진단서 **발급일이 면허교부신청서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

6.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해당자에 한함)

- 관련서식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
- 사진교체 : 요구서(사진 1매 부착), 신분증 사본을 방문·우편 제출
- 이름변경 : 개명 시, 요구서와 신분증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개인정보 변경 내역 반드시 포함)을 방문·우편 제출

7. 기타 제출 서류

-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면허·자격 발급 신청안내]-[직종별 신청서류] 참고

Q1.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원서 접수를 하지 못한 경우, 추가접수가 가능한가요?

☞ 국시원에서는 국가시험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천재지변을 제외한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각 대학담당자분들은 응시자(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가 기간 내에 접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응시원서 접수 현황을 수시로 체크하시어 누락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국가시험에 합격하였는데, 졸업을 탈락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국가시험에 합격한 응시자가 졸업을 탈락했을 경우, 추후에 해당 응시자가 시험에 다시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에서 졸업사정 직후 해당 응시자의 졸업탈락 공문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학교에서 졸업탈락 공문을 발송하지 않아 합격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응시자는 합격자로 이력이 남게 되어 향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Q3. 국가시험에 불합격하고 졸업을 탈락하였습니다. 이 경우 우리학교의 합격률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Q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졸업사정 직후 해당 응시자의 졸업탈락 공문을 발송하면 응시 결격자로 처리되어 전체 응시자에서 제외되므로 합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Q4. 외국대학 졸업자는 원서접수와 면허교부를 어떻게 하나요?

☞ 외국대학 졸업자로 기존에 국가시험 응시이력이 있거나, 2024년도 외국대학 인정심사를 통해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시고, 그 외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확인(아포스티유 비협약국가의 경우, 영사확인)을 받은 졸업증명서, 면허증, 성적증명서 서류와 출입국사실증명서(입학연도~졸업연도 출입국내역 포함)를 원서접수기간 내에 직접 국시원(자격관리부)에 방문하셔서 확인 받으신 후 접수하셔야 합니다.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교부신청 시에는 면허교부신청서, 의사진단서, 유효기간 내의 외국의 면허증 사본 또는 면허증명서(필요시)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외국국적자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필요)

Q5. 외국대학 졸업자는 원서접수 관련 서류에 대해 사전검토 가능한가요?

☞ 국가시험에 최초로 응시하는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해 사전검토를 원하시는 분은 국시원 자격관리부에 문의하시거나 국시원 방문을 통해 서류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하시기 전에 응시자격 담당자에게 연락(02-2251-6283)바랍니다.